##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05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양문석・이건태・김현정

장철민 • 민형배 • 오세희

김문수 • 이기헌 • 조계원

이광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제2항 본문 중 "사고로"를 "사고(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	2		
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			
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			
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			
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며, 그 기관의 장이 <u>사고로</u>	<u>사고(탄</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부득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	없을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u>는 경우를 말한다)로</u>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